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 안 관련 번호 1779 제안년월일: 2024년 4월 29일 제 안 자 : 보건복지위원장

1. 수정 이유

- 현행 '서울특별시 먹거리 위원회'가 2인의 공동위원장 체제임을 고려하여,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 지명권'을 '시민건강국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하고자 함.
- 동 개정(안) 제32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조문을 제8조의 2로 명확히 하여 '구체적인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위원의 해촉'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수정의 주요 내용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는 위원'에 대한 '사전 지명권'을 '시민건강국장'의 권한으로 명확히 함. (안제24조제4항)
- 동 개정(안) 제32조에서 '위원의 해촉'을 위해 인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조문을 제8조의 2로 명확히 하고자함. (안제32조)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 정한다.

안 제24조제4항 중 "위원장이 미리"를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로 한다.

안 제32조 중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 조의2제1항"을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 8조의2"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서울특별시장) (1779호)	수 정 (안) (보건복지원회)
제24조(위원장 등) ①	제24조(위원장 등) ①	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생 략)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모두 직무	④ 위원장 모두가 부	④ 위원장 모두가 부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는 부위원장이 그 직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무를 대리한다.	는 부위원장이 그 직	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하고, 위원	무를 대행하고, 위원
	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u>위원장이 미리</u>	에는 <u>위원장 중 시민</u>
	지명한 위원이 그 직	<u>건강국장이 미리</u> 지
	무를 대행한다.	명한 위원이 그 직무
		를 대행한다.
제32조(위원의 제척ㆍ기	제32조(위원의 해촉, 제	제32조(위원의 해촉, 제
피·회피·위촉 해제	척·기피·회피) 위원	척·기피·회피)
•결격사유) ① 위원	의 해촉, 제척 • 기피	
중 심의・자문 등과	·회피에 관하여는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	「서울특별시 각종	「서울특별시 각종
계가 있는 위원은 해	위원회의 설치·운영	위원회의 설치·운영
당 안건의 심의ㆍ자문	에 관한 조례」 제8	에 관한 조례」 제8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조의2제1항 및 제9조	조의2

자격이 없는 것으로 에 따른다.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 · 자문 등과 조정 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 건의 심의 · 자문 등에 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 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 의 · 자문 등에 참여하 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서울특별 시 각종 위원회의 설 치 · 운영에 관한 조 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 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 정후견인 또는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 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 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되 지 아니한 사람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 예기간이 끝난 날부 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사람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충분한"을 "충분하며 안전한"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위촉직 위원"을 "위촉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되고"를 "맡고"로, "된다"를 "맡는다"로 한다.

제24조제4항 중 "모두"를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로, "때는"을 "때에는"으로, "대리한다"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 중 시민건강국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본문 중 "서면으로 통보"를 "통보"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경우에는"을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으로 한다.

제28조제4항 중 "분기"를 "분기별"로, "할"을 "개최할"로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다.

제33조 본문 중 "출석한 자에 대하여"를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34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35조 중 "2024년 9월 21일"을 "2027년 9월 30일"로 한다.

서울특별시조례 제6667호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부칙 제3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본이념) ①・② (생 략)	제2조(기본이념) ①・② (현행과 같
	<u>수</u>)
③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신선하	③
고 영양이 <u>충분한</u> 먹거리에 쉽게	<u>충분하며 안전한</u>
접근할 수 있는 먹거리체계를 만	
든다.	.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	제23조(구성) ①
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	
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u>위촉직 위원</u> 수의 10	<u>위촉위원</u>
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	
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간사는 식품정책과장	⑤
이 <u>되고,</u> 서기는 위원회를 담당하	- <u>맡고</u>
는 팀장이 <u>된다</u> .	<u>맡는다</u> .
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생 략)	제24조(위원장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 <u>모두</u> 직무를 수행할 수	④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을 <u>때는</u>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u>로</u>
대리한다.	- 때에는 대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② (생략)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 건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⑥ (생 략)

제28조(분과위원회) ① ~ ③ (생략)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u>분기</u> 1회로 하되, 분과위원장 또는 분과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분과위원회 회의를 할 수 있다.

제3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촉 해제·결격사유) ① 위원 중 심의·자문 등과 관련한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

행 :	하고	., 위역	원장과	부	위원경	항 모	<u>.</u> 두
<u>가</u>	부	득이힌	<u>.</u> 사유	-로	직무를	를 수	행
<u>할</u>	수	없을	때에	는 후	비원장	· 중	시
<u>민</u>	건강	·국장·	이 미리	박 지	명한	위원	<u> </u> 0]
<u>그</u>	직	무를 1	개행한	<u>다</u> .			

제26조(위원회	회의	등) ①	· ② (현
행과 같음)			
③			
<u>통</u>	<u> 보</u>		
		사유로	위워회

--. ------ <u>사유로 위원회</u> <u>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u> <u>관련된 사항 등은</u>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분과위원회) ① ~ ③ (현행 과 같음)

4	<u>분기별</u>

---- 개최할 --.

제32조(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회피)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 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 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전의 심의·자문 등에 대하여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자문 등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심의·자문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 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 스로 그 안건의 심의·자문 등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④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 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 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 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사람

<u>조례」 제8조의2 및 제9조에 따른</u> 다.

-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제33조(수당) 시장은 제26조 및 제2 8조 규정에 의한 회의에 참석하거 나 위원회 등의 활동에 참여한 위 원 및 제30조 규정에 의거 위원회 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한다.
- 제3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u>관하</u> 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 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 의 존속기한을 <u>2024년 9월 21일</u>까 지로 한다.

제33조(수당)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
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4조(운영세칙)
필요
<u>한</u>
제35조(위원회의 존속기한)
<u>2027년 9월 30일</u>
.